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시·도경찰청장이 차량의 적재(積載) 관련 안전기준 위반행위 확인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에 적재량 측정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9조의2), 제출받은 적재량 측정자료는 과태료의 부과를 위한 위반행위 입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0조제3항).
- 경찰청장이 지역별 교통안전수준의 측정을 위하여 교통안전지표를 개발·조사·작성·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44조의2), 해당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7조제7항).

II. 검토의견

- 안 제39조의2는 도로관리청에 대한 적재량 측정자료 요청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¹⁾를 도로관리청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이 아님.
- 도로관리청이란 공물인 도로의 관리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도로법」 제2조제5호), 원칙적으로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관리청이 아니고,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권한을 설정받는 경우 도로관리권자가 될 수 있음(「유료도로법」 제10조 등 참조).¹⁾

1) 유료도로법

제10조(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고 그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점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유료도로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제21조(통행료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 ④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유료도로(고속국도만 해당한다)의 경우 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한국도로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도로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다만,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으로 의제됨(「도로법」 제112조).

- 안 제39조의2가 한국도로공사를 도로관리청에 포함하고 있는 것도 「도로법」 제1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법」 제77조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적재량 측정 등을 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으로 의제됨을 고려한 것임.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도로법 시행령

제103조(고속국도에 관한 업무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법 제31조 제1항,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 제2항, 제47조의2, 제49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1항·제2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 제2항·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 제2항, 제111조와 이 영 제43조 및 제4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안 제39조의2 중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는 「도로법」 제1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9조의2(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자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재중량과 적재용량에 관한 안전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u>「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다.</u>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같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적재량을 측정한 자료(이하 “적재량 측정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의2(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자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재중량과 적재용량에 관한 안전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u>「도로법」 제1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다.</u>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같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적재량을 측정한 자료(이하 “적재량 측정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안 제160조는 적재량 안전기준 위반행위의 입증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사진, 비디오테이프, 적재량 측정자료 또는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디오테이프’는 영상기록매체의 예시인 반면, ‘적재량 측정자료’는 영상기록매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적재량 측정자료’가 영상기록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추가하는 것이 개정의 취지임.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160조(과태료) ① · ② (생략)	제160조(과태료)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 제1항·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제3항·제5항, 제14조제2항·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1항·제2항·제5항,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7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u>사진, 비디오테이프, 적재량 측정자료 또는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u>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 제1항·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제3항·제5항, 제14조제2항·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1항·제2항·제5항,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7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u>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u>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④ (생략)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	---

-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수정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